

# 주식회사 우성사료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본 회사는 주식회사 우성사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WOOSUNG FEED CO., LTD.라 기술한다.

제 2 조【목적】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료의 제조, 판매업
2. 농, 축, 수산물의 재배, 사육, 가공판매업
3. 무역업
4. 부동산 임대업
5. 유통업 및 종합물류사업
6. 체육·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  
    등 부대시설 운영 및 임대업
7. 일반 건설업 및 주택사업 임대 및 분양
8. 주차장 시설 및 운영업
9.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서비스업 (2002.3.15개정)
10. 위 각호의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소재지】본 회사는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장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①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② 전항의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대전일보」또는 「중도일보」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할 주식의 총수】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천만주로 한다. (2006.3.17 개정)

제 6 조【일주의 금액】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당 금액은 오백원정도로 한다. (2006.3.17개정)

제 7 조【주식의 종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오백만주로 한다. (2006.3.17개정)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주권의 종류】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제 9 조【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4.3.21개정)

-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개정)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09.3.13개정)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2009.3.13개정)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국내외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 출자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04.3.12개정)
-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4.3.21개정)
- ④ 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4.3.21신설)

제 10 조【시가발행】①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발행가액, 기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② 제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9조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2009.3.13개정)

제 10 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1996.3.15신설)

제 11 조【명의개서 대리인】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2009.3.13개정)

제 12 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①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1996.3.15개정)

②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때에는 국내에 거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변경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 각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회사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1997.3.14개정)

## 제 3 장 사 채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4.3.21개정)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4.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 신설)
  5. 국내외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 출자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요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1996.3.15개정)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4.3.21개정)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4.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1신설)

5. 국내외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 출자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 ② 신주인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수 1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1996.3.15개정)

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총회의 소집】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의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총회일의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대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감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09.3.13개정)

제 18 조【소집권자】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 19 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의장】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 21 조【의장의 질서유지권】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주주의 의결권】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23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1996.3.15개정)

제 24 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리인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② 대리인은 본 회사 주주에 한하여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1996.3.15개정)



## 제 5 장 이 사, 감 사 및 이 사 회

제 26 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1996.3.15개정)

③ 본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 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1999.3.12개정)

제 27 조【이사 및 감사의 수】본 회사에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을 둔다.

제 28 조【이사의 임기】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다.(2009.3.13개정)

제 29 조【감사의 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1996.3.15개정)

제 30 조【결원의 보선】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4.3.21개정)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되도록 한다.  
(2014.3.21신설)

제 31 조【대표이사 등 호선】본 회사는 이사회를 결의로서 이사중에서 이사회장 1명, 부회장 2명, 대표이사 사장 1명,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각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2 조【이사의 임무】① 대표이사 사장은 본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그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위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의2【이사의 보고의무】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996.3.15신설)

②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4.3.12 신설)

제 33 조【이사회】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34 조【이사회 의장】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이에 임한다. 대표이사 사장이 부재중이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이사회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의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 36 조【이사회회의 결의】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 37 조【감사의 감사록】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1996.3.15신설)

제 38 조【이사회 의사록】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1996.3.15개정)

제 39 조【상임감사】본 회사는 호선으로 1명 이상의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0 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1996.3.15개정)

제 41 조【고문, 촉탁】본 회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고문 및 촉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2 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제 6 장 계 산

제 43 조【사업연도】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 44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회사는 제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본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본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997.3.14개정)

1. 이익준비금의 적립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차기이월이익잉여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6 조【이익배당】①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

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1996.3.15신설)

④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⑤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 칙

1. (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법령에 따른다.
2. (문화사업 및 육영사업) 본 회사는 문화사업 및 육영사업을 할 수 있다.
3. (사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집행상 또는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4. (경과규정) 본 정관 중 1987년 4월 28일 개최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조항은 결의시로부터 실시한다. 단, 정관개정전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선임일로부터 제28조 및 제29조의 적용을 받는다.

1976년	3월 20일 개정	1988년	7월 13일 개정
1977년	1월 7일 개정	1988년	7월 15일 개정
1983년	10월 15일 개정	1988년	7월 25일 개정
1984년	9월 29일 개정	1989년	3월 17일 개정
1985년	2월 1일 개정	1990년	3월 16일 개정
1985년	3월 4일 개정	1991년	3월 15일 개정
1987년	4월 28일 개정	1995년	3월 16일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의2,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예)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년 3월 15일 개정

1997년 3월 14일 개정

1999년 3월 12일 개정

2002년 3월 15일 개정

2004년 3월 12일 개정

2006년 3월 17일 개정

2009년 3월 13일 개정

2013년 3월 22일 개정

2014년 3월 21일 개정